

#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의안  
번호 2660

제출년월일 : 2015. 6. // 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'94년 개관이래 22년간 동결된 수강료를 물가 상승과 인근 자치단체 사례를 반영하여 일부 인상함으로써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하고
- 유아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수탁료를 신설하여,
- 여성비전센터의 효율적인 교육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「안산시 여성정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통합 (안 제2조)
- 물가상승 및 타 지자체 사례 반영한 수강료 현실화에 따른 인상(안 별표)

구 분	교육과정	금 액	비 고
1인 1개월(4주)	월 12시간 이하 과목	10,000원	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부담
	월 16시간 이하 과목	12,000원	
	월 20시간 이하 과목	14,000원	
	월 24시간 이하 과목	16,000원	

- 유아실 시간제 운영 도입에 따른 시간제 수탁료 신설(안 별표)

기 준	요 금	비 고
1인 1개월(4주)	15,000원	
1인 1시간	1,000원	1시간 미만 이용은 1시간으로 봄

- 전문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평생교육사 등 전문인력 배치(안 제4조)
- 수강료 면제 대상자 정비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육운영(안 제7조)

- 교육시간에 따라 세분화된 수강료 반환 기준 마련(안 제8조)
- 이해하기 쉽고 현실에 맞는 용어로 조문 정비

**개정조례안** : 불임

**신·구조문대비표** : 불임

**관계법령발췌서** : 불임

-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

**관련사업계획서** : 불임

**예산수반사항** : 불임

**사전예고(결과)**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5. 5.6.~ 5.26.

**기타 참고사항** : 불임

- 현행조례(전문)

#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안산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안산시 여성비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명 칭	위 치
여성비전센터	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(고잔동)
여성정보하우스	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(월피동, 민방위교육장 내)

**제3조(사업)**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
2.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
3.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·알선
4. 유아실 운영
5.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
6. 근로독신여성 임대아파트 운영
7. 시설물 대여사업
8.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

**제4조(전문인력 배치)** ① 안산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전문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교육과 연계된 취업지원을 위하여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.

**제5조(시설의 사용 등)**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시장은 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미 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승낙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·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
3. 상행위, 공연, 종교집회 등 센터의 목적 및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
4.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**제6조(양도 등 금지)**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**제7조(사용료 등)**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센터 사용료 등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6. 「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
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습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(사용료 등의 반환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
  - 가.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
  - 나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
  - 다. 사용일 또는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
2. 강의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남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반환

**제9조(위탁운영)**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센터의 설치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0조(지도감독)**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위탁의 해지)**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때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
3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
**제12조(강사)** ① 센터의 교육강사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교육운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강사 위촉해제)**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자
2.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자
3.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
4. 센터의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·운영하지 못할 경우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** 「여성정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소관 실·과		여성비전센터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여성비전센터장 김 창 섭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교육담당 정 성 호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미 정 (행정 2762)

[별표]

## 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

(조례 제7조 관련)

### 1. 기본시설 사용료

구 분	기본단위	기본금액	비 고
대강당	2시간내	50,000원	기본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금액의 20% 가산

### 2. 냉·난방 사용료

구 分	기준단위	기본금액	비 고
대강당	1회(2시간)	50,000원	기본단위 초과 시 매시간당 기본금액의 20%가산

### 3. 부대시설 사용료

구 分	기 준	기본금액	비 고
음향기기	1 회	20,000원	1회는 오전, 오후 중 하나를 자칭함

### 4. 유아실 수탁료

기 준	요 금	비 고
1인 1개월(4주)	15,000원	
1인 1시간	1,000원	1시간미만 이용은 1시간으로 봄

### 5. 교육 수강료

구 分	교육과정	금 액	비 고
1인 1개월(4주)	월 12시간 이하 과목	10,000원	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 부담
	월 16시간 이하 과목	12,000원	
	월 20시간 이하 과목	14,000원	
	월 24시간 이하 과목	16,000원	

가. 특별 프로그램 수강료는 교육주관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나. 교육 종 정원마달로 수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남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로 산정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여성 및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여성비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안산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					
<p><b>제2조(위치)</b> 센터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5번지에 둔다.</p>	<p><b>제2조(명칭 및 위치)</b> 여성비전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</p> <table border="1"><thead><tr><th>명 칭</th><th>위 치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여성비전센터</td><td>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(고잔동)</td></tr><tr><td>여성정보하우스</td><td>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(월피동, 민방위교육장 내)</td></tr></tbody></table>	명 칭	위 치	여성비전센터	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(고잔동)	여성정보하우스	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(월피동, 민방위교육장 내)
명 칭	위 치						
여성비전센터	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28(고잔동)						
여성정보하우스	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(월피동, 민방위교육장 내)						
<p><b>제3조(기능)</b> 센터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</li><li>2. 근로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</li><li>3.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취미교육</li><li>4. 단기부업교육 및 소양교육</li><li>5. 건전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</li><li>6. 신상 및 생활고충 상담</li><li>7.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부업 알선</li><li>8. 수강생자녀 수탁보호</li><li>9.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 지원</li><li>10.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사업의 전개</li><li>11. &lt;삭제 2000.10.20&gt;</li><li>12.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</li><li>13. 시설물 대여사업</li><li>14.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운영</li><li>15.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</li></ol>	<p><b>제3조(사업)</b>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</li><li>2.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</li><li>3.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· 알선</li><li>4. 유아실 운영</li><li>5.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</li><li>6. 근로독신여성 임대아파트 운영</li><li>7. 시설물 대여사업</li><li>8. 그 밖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</li></ol>						

현 행	개 정 안
<b>제4조(공무원)</b> 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,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	<b>제4조(전문인력 배치)</b> ① 안산시장(이하 '시장'이라 한다)은 전문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교육과 연계된 취업지원을 위하여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. <b>&lt;삭제&gt;</b>
<b>제5조 &lt;삭제 2000.10.20.&gt;</b>	
<b>제6조(시설의 사용)</b>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의 센터 수가기준표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	<b>제5조(시설의 사용 등)</b>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시장은 센터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미 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승낙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·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</li> <li>3. 상행위, 공연, 종교집회 등 센터의 목적 및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4.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li> </ul>
<b>제7조(사용제한)</b>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미 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삭제 2000.10.20&gt;</li> <li>2. 승낙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·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</li> <li>3. &lt;삭제 2000.10.20&gt;</li> <li>4. &lt;삭제 2000.10.20&gt;</li> <li>5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했을 때</li> <li>6. 상행위, 불법집회, 음악콘서트 등 일반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</li> <li>7. 기타 센터장이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</li> </ul>	
<b>제8조(양도등 금지)</b>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센터장의 승인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	<b>제6조(양도 등 금지)</b>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9조(사용료 등의 면제)</b> 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대강당, 전시실 및 기타시설물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</u></li> <li><u>2.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</u></li> <li><u>3. 모자복지법에 의한 저소득모자가정</u></li> <li><u>4.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</u></li> <li><u>5. 「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</u></li> <li><u>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li> </ul> <p>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습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<b>제7조(사용료 등)</b>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센터 사용료 등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</u></li> <li><u>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</u></li> <li><u>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</u></li> <li><u>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</u></li> <li><u>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</u></li> <li><u>6. 「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 가정</u></li> <li><u>7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u></li> </ul> <p>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습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<b>제10조(사용료 등의 반환)</b> 이미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전액반환</u></li> <li><u>2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</u></li> <li><u>3. 사용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반환</u></li> <li><u>4.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 반환</u></li> </ul>	<p><b>제8조(사용료 등의 반환)</b>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가.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</u></li> <li><u>나.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</u></li> <li><u>다. 사용일 또는 강의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</u></li> </ul> </li> <li><u>2. 강의개시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남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반환</u></li> </ul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1조(위탁운영)</b>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9조(위탁운영)</b>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센터의 설치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
<p><b>&lt;신설&gt;</b></p>	<p><b>제10조(지도감독)</b>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자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
<p><b>&lt;신설&gt;</b></p>	<p><b>제11조(위탁의 해지)</b>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수탁자가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한 때</li> <li>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</li> <li>3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</li> </ol>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2조(강사)</b> ① 센터에서 교육하는 과목의 강사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한다. 다만,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센터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2조(강사)</b> ① 센터의 교육강사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교육운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13조(강사 위촉해제)</b>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 그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자</li> <li>2.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자</li> <li>3.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</li> <li>4. 센터의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·운영하지 못할 경우</li> </ol>
<p><b>제13조(시행규칙)</b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b>제14조(시행규칙)</b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## [별표]

**복지회관 수가 기준표**(조례 제6조와 관련)**1. 기본시설 사용료**

구 분	사용 목적	기본 단위	기본 요액	비 고
대강당	공연 발표 교육행사 등	2시간 내	50,000 원	·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및 이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%가산 · 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 가산

**2. 냉 · 난방사용료**

구 분	기준단위	기본요액	비 고
대강당	1회 (2시간)	50,000원	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%가산

**3. 유아실 수탁료**

구 分	기 준	요 액	비 고
교육수강생 자녀수탁료	1인 1월	15,000원	오전, 오후반 구분운영

**4. 교육수강료**

대 상	교육과정	기 준	요 액	비 고
일반 여성	기술교육 취미교육	1인 1개월	10,000원	·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
근로 청소년	기술교육 취미교육	1인 1개월	10,000원	· 근로청소년은 만24세 이하로 하고 수강료는 면제함 ·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

**5. 부대시설 사용료**

구 分	기준	요 액	비 고
음향기기사용	1 회	20,000원	1회는 오전 오후, 야간 중 하나를 지정함
피아노	1 회	10,000원	

## [별표]

**여성비전센터 사용료 등**(조례 제7조 관련)**1. 기본시설 사용료**

구 分	기본단위	기본금액	비 고
대강당	2시간내	50,000원	기본단위 초과시 매시간당 기본금액의 20% 가산

**2. 냉 · 난방 사용료**

구 分	기준단위	기본금액	비 고
대강당	1회 (2시간)	50,000원	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금액의 20% 가산

**3. 부대시설 사용료**

구 分	기 준	금 액	비 고
음향기기	1 회	20,000원	1회는 오전, 오후 중 하나를 지정함

**4. 유아실 수탁료**

기 준	요 금	비 고
1인 1개월(4주)	15,000원	
1인 1시간	1,000원	1시간 미만 이용은 1시간으로 통

**5. 교육 수강료**

구 分	교육과정	금 액	비 고
1인 1개월(4주)	월 12시간 이하 과목	10,000원	교재비 및 재료비는 별도부담
	월 16시간 이하 과목	12,000원	
	월 20시간 이하 과목	14,000원	
	월 24시간 이하 과목	16,000원	

- 가. 특별 프로그램 수강료는 교육주관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  
 나. 교육 중 정원미달로 수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남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로 산정한다.

#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660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. 7. 8.
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## □ 수정이유

- 애매한 조문을 명확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수정하고,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.
- 부칙에서 필요한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의 혼선을 방지함.

## □ 주요골자

- 애매한 조문('시설')을 명확한 의미('사업')를 지닐 수 있게 수정하고,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함. (안 제9조, 안 제12조제1항)
- 부칙에서 교육 수강료와 사용료 등의 반환 적용에 경과규정을 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함.(안 부칙 제1조 단서 신설)

## **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안 제9조 중 “센터가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” 를 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”로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1항 중 “교육강사” 를 “교육강사(이하 “강사” 라 한다)”로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7조(사용료 등)제1항의 별표 중 제5호 교육 수강료와 제8조(사용료 등의 반환)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수강생 모집 공고를 하는 교육운영부터 적용한다.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b>제11조(위탁운영)</b>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케 할 수 있다.</p>	<p><b>제9조(위탁운영)</b> 센터가 운영하는 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센터의 설치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	<p><b>9조(위탁운영)</b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-----</p>
<p><b>제12조(강사)</b> ① 센터에서 교육하는 과목의 강사는 3년마다 공개모집을 통하여 채용한다. 다만,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센터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</p> <p>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2조(강사)</b> ① 센터의 교육강사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응모자가 없거나 기타 교육운영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2조(강사)</b> ① ----- 교육강사(이하 “강사”라 한다)-----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제1조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다만, 제7조(사용료 등) 제1항의 별표 중 제5호 교육 수강료와 제8조(사용료 등의 반환)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	<u>수강생 모집 공고를 하는 교육운영부터 적용한다.</u>